

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영동군 고시 제2023-159호

##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개근교	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860-7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관리교	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467-7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	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				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 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죽전교	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 233-1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주곡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31-19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영동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901-4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	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				<p>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*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* 영동교는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에서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된 상태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및 기능 상실이 우려되므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</p>	
영동제3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1-1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<p>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</p> <p>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*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
조심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1-4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<p>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</p> <p>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*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				합니다.	
회동교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213-7	영동군청	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송천교	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올리 681-16	영동군청	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 전관리가 필요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 ※ 송천교는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에서 광범 위한 결함이 발생된 상 태로서 구조물의 안전 성 및 기능 상실이 우 려되므로 정밀안전점검 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	
양강교	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45-2	영동군청	재난발생의 위험이 <sup>1</sup> 있거나 계속적 안 전관리가 필요	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 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	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				<p>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※ 양강교는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에서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된 상태로서 구조물의 안전성 및 기능 상실이 우려되므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</p>	
자계1교	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산 42-1	영동군청	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	<p>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</p> <p>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